

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변경사항	법개정
1	미래에셋솔로몬중기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	1), 9)	주 1)
2	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	1), 9)	주 1)
3	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2), 6), 7), 9)	주 1)
4	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2), 6), 7), 9)	주 1)
5	미래에셋퇴직연금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2), 6), 7), 9)	주 1)
6	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2), 6), 7), 9)	주 1)
7	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2), 6), 7), 9)	주 1)
8	미래에셋퇴직플랜 1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2), 6), 7), 9)	주 1)
9	미래에셋퇴직플랜 2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2), 6), 7), 9)	주 1)
10	미래에셋퇴직플랜 3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2), 6), 7), 9)	주 1)
11	미래에셋퇴직플랜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2), 7), 9)	주 1)
12	미래에셋퇴직플랜 G1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2), 6), 7), 9)	주 2)
13	미래에셋퇴직플랜 G2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2), 6), 7), 9)	주 2)
14	미래에셋퇴직플랜 G3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2), 6), 7), 9)	주 1)
15	미래에셋퇴직플랜 G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2), 6), 7), 9)	주 2)
16	미래에셋퇴직플랜 G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2), 6), 7), 9)	주 2)
17	미래에셋퇴직플랜 G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2), 6), 7), 9)	주 2)
18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2), 7), 9)	주 1)
19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로스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2), 9)	주 1)
20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 5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)	2), 9)	주 1)
21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헬스케어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2), 9)	주 1)
22	미래에셋퇴직플랜단기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)	2), 6), 7), 9)	주 1)
23	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 3/1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2), 6), 7), 9)	주 1)
24	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 3/10 증권자투자신탁 2 호(채권혼합)	2), 6), 7), 9)	주 1)
25	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 3/10 증권자투자신탁 3 호(채권혼합)	2), 6), 7), 9)	주 1)
26	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 3/10 증권자투자신탁 4 호(채권혼합)	2), 6), 7), 9)	주 1)
27	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 4/15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2), 6), 7), 9)	주 1)
28	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2), 7), 9)	주 1)
29	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 2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2), 6), 7), 9)	주 2)
30	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2), 7), 9)	주 1)
31	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2), 6), 7), 9)	주 2)
32	미래에셋퇴직플랜중국본토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2), 9)	주 2)

33	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2), 6), 7), 9)	주 1)
34	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	2), 7), 9)	주 1)
35	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2), 6), 7), 9)	주 1)
36	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	1), 2. 3), 6), 9)	-
37	미래에셋코스닥혁신성장증권투자신탁(주식)	4), 5)	-
38	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 11 호	6), 9)	-

2. 변경 사항:

- 1) 투자신탁 명칭 변경
- 2)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
- 3) 클래스 신설
- 4) 운용역 변경
- 5)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
- 6)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7) 변동성 값 업데이트
- 8)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9) 대표이사 변경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1년 12월 29일 (수)

4. 변경 내용:

- 1) 투자신탁 명칭 변경

[투자설명서]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미래에셋 <u>솔로몬</u> 중기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	미래에셋 <u>코리아</u> 중기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
	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	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 <u>국공채</u>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
	미래에셋 <u>스마트</u> 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	미래에셋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u><신설></u>	<u>[2021.12.29] 투자신탁 명칭변경(미래에셋솔로몬중기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 → 미래에셋코리아중기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)</u>
	<u><신설></u>	<u>[2021.12.29] 투자신탁 명칭변경(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 → 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)</u>
	<u><신설></u>	<u>[2021.12.29] 투자신탁 명칭변경(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 → 미래에셋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)</u>

		<u>합자산자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 → 미래에셋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</u>
--	--	--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“미래에셋 <u>솔로몬</u> 중기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”로 한다.	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“미래에셋 <u>코리아</u> 중기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”로 한다.
	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“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”로 한다.	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“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 <u>국공채</u> 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”로 한다.
	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“미래에셋 <u>스마트</u> 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”로 한다.	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“미래에셋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”로 한다.

2)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

- 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

[투자설명서]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		
투자목적 및 투자전략	2. 투자전략 ① 미래에셋 <u>스마트</u> 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모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에 80% 이상 투자합니다.	2. 투자전략 ① 미래에셋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모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에 80% 이상 투자합니다.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신설>	<u>[2021.12.29]모투자신탁 명칭변경(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모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 → 미래에셋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모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[모자형 구조] -미래에셋 <u>스마트</u> 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모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	[모자형 구조] -미래에셋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모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	-미래에셋 <u>스마트</u> 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모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	-미래에셋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모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두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- 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혼합모산자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	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두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- 미래에셋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모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

- 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 제외 33개 펀드

[투자설명서]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		
투자목적 및 투자전략	2. 투자전략 <생략> 미래에셋 퇴직플랜 증권 모두자신탁(채권)을 합하여 60% 이상을 투자합니다.	2. 투자전략 <생략> 미래에셋 퇴직플랜 장기 증권 모두자신탁(채권)을 합하여 60% 이상을 투자합니다.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신설>	[2021.12.29]모투자신탁 명칭변경(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모투자신탁(채권) → 미래에셋퇴직플랜장기증권모투자신탁(채권))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	-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모투자신탁(채권)	- 미래에셋퇴직플랜 장기 증권모투자신탁(채권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두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- 미래에셋 퇴직플랜 증권 모두자신탁(채권)	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두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- 미래에셋 퇴직플랜 장기 증권 모두자신탁(채권)

3) 클래스 신설

[투자설명서]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		
환매수수료	<신설>	C-a 클래스 추가 [아래 참조 1]
제 1 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
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<u><신설></u>	<u>C-a 클래스 추가</u> <u>[아래 참조 1]</u>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<u><신설></u>	<u>C-a 클래스 추가</u> <u>[아래 참조 1]</u>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u><신설></u>	<u>[2021.12.29] 종류 C-a 신설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[종류형 구조]	<u><신설></u>	<u>C-a 클래스 추가</u> <u>[아래 참조 1]</u>
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	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- <u><신설></u>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- <u>[아래참조1]</u>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<u><신설></u>	<u>C-a 클래스 추가</u> <u>[아래 참조 1]</u>
제39조(보수)	<u><신설></u>	<u>C-a 클래스 추가</u> <u>[아래 참조 1]</u>

[참조 1] 가입자격

구분	가입자격			
종류 C-a	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(이하“법”이라한다) 제 9 조제 5 항제 4 호및제 5 호에 따른 전문투자자로 50 억 이상 투자자			
펀드명	신설클래스	판매보수(%)	후취 판매 수수료(%)	환매 수수료

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자 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	<u>C-a</u>	<u>0.05</u>	<u>해당사항 없음</u>	<u>1년미만 환매 시 : 환매 금액 의 1.00%</u> <u>2. 1년 경과일 로부터 투자신 탁해지 이전 환 매시 : 해당사 항 없음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

4) 운용역 변경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		
<운용전문인력>	정원택(책임), <u>권혁범(부책임)</u>	정원택(책임), <u>이슬(부책임)</u>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u><신설></u>	<u>[2021.12.29] 운용역 변경(정원택(책임), 권혁범(부책임)→정원택(책임), 이슬(부책임))</u>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정원택(책임), <u>권혁범(부책임)</u>	정원택(책임), <u>이슬(부책임)</u>

5)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

미래에셋코스닥혁신성장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<모투자신탁 운용인력>	정원택(책임), <u>권혁범(부책임)</u>	정원택(책임), <u>이슬(부책임)</u>

6)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		

투자비용	-	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) 업데이트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) 및 증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-	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		
4. 가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	-	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업데이트

7) 변동성 값 업데이트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6. 10.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연환산 표준편차: [아래 참조1] 위험등급: [아래 참조1]	연환산 표준편차: [아래 참조1] 위험등급: [아래 참조1]

[아래 참조1]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3	3	10.74	10.28
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7.81	7.82
미래에셋퇴직연금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6.52	6.51
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3	3	10.34	10.2
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9.93	9.75
미래에셋퇴직플랜 1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5	2.54	2.78
미래에셋퇴직플랜 2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5	4.28	4.5
미래에셋퇴직플랜 3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6.27	6.49
미래에셋퇴직플랜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8.33	8.57
미래에셋퇴직플랜 G1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5	2.44	2.66
미래에셋퇴직플랜 G2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5	3.97	4.13
미래에셋퇴직플랜 G3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5.73	5.88
미래에셋퇴직플랜 G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7.57	7.71
미래에셋퇴직플랜 G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3	3	11.35	11.5
미래에셋퇴직플랜 G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7.61	7.75
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7.55	7.56
미래에셋퇴직플랜단기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)	6	5	0.4	0.55

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 3/1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8.11	7.72
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 3/10 증권자투자신탁 2 호(채권혼합)	4	4	8.09	7.67
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 3/10 증권자투자신탁 3 호(채권혼합)	4	4	8.11	7.68
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 3/10 증권자투자신탁 4 호(채권혼합)	4	4	8.09	7.77
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 4/15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8.24	7.94
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6.12	5.77
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 2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5	3.39	3.35
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6.24	6.04
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6.28	6.08
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3	3	12.39	12.68
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)	5	5	3.32	3.67
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8.29	8.54

8)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주 1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 ②~③ <생략> <신설>	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②~③ <생략>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주 2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---------------	--	---

9) 대표이사 변경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대표이사>	<u>김미섭</u>	<u>이병성</u>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

[별첨] 담당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

1. 경력

1) 성명: 이슬

2) 주요 경력

(11년~현재)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

2. 운용현황(2021.11.30 현재 공모펀드,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펀드)

해당사항 없음

3. 운용성과(2021.11.30 현재 공모펀드 나열, 기간별 수익률, %)

해당사항 없음